

국내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방안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2020.12.18

이경희

목차

1. 단체신용생명보험 특성
2. 해외사례
 - 가. 미국
 - 나. 캐나다
 - 다. 일본
3. 국내 현황 및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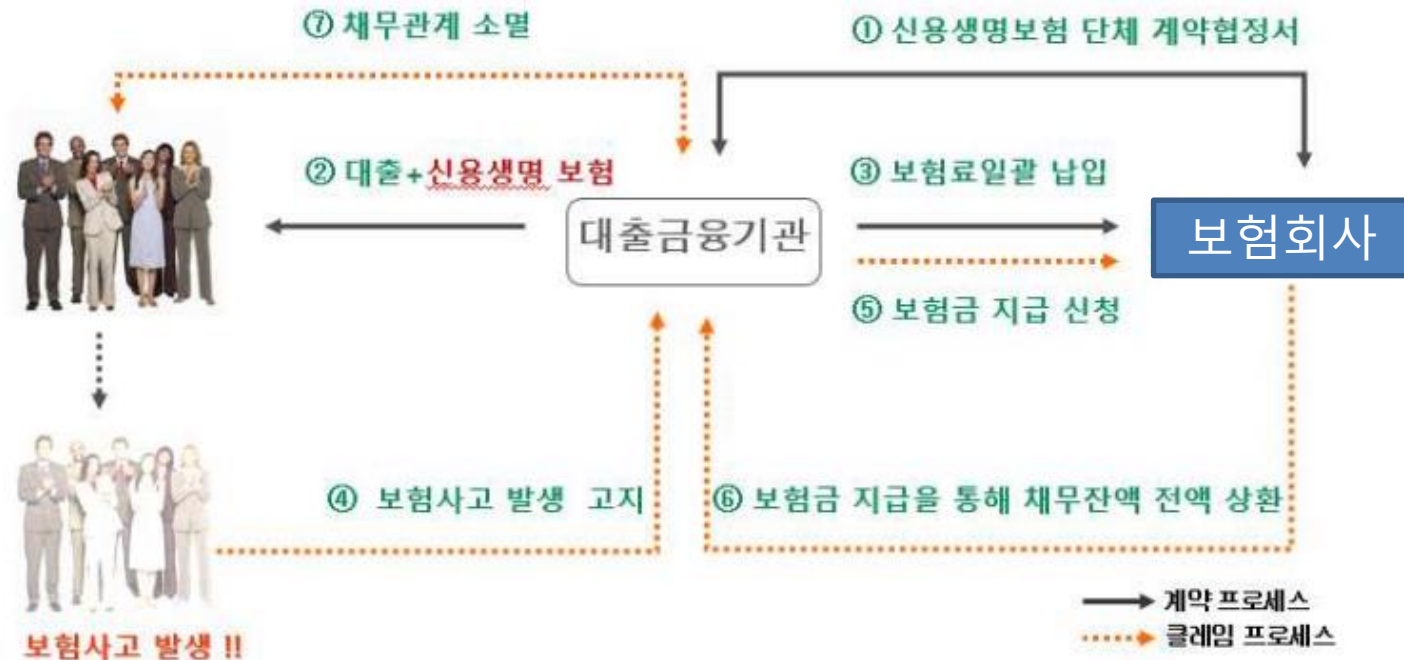
단체신용생명보험 특성

1. 계약 구조

○ 신용생명보험은 채권자인 대출금융기관이 계약자 & 수익자, 차입자가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계약

- 방카슈랑스 방식으로 판매 시 은행은 대표계약자(대출원금+이자+보험료 수취)=수익자(보험사고 시 보험금 수령)=판매자(모집수수료 수령)

단체신용생명보험 계약 관계



2. 소비자보호 문제

● 신용보험은 특성상 소비자보호에 취약

-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에서 신용보험 관련 불공정영업 문제로 관련 금융회사 패널티 부과, 규정 정비
- 국내에서도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판매한 신용카드사 과도한 수익 문제

유럽 신용보험관련 감독조치

	주요 조치
영국	대출 승인 후 최소 7일 경과 전까지 판매 금지
독일	· 보험계약법 개정(2018.2.23. 발효)하여 법적 요구사항 추가 - 은행에게 차입자가 피보험자임을 알리도록 의무 부과 - 차입자에게 해지권 부여
프랑스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보험계약이 소비자 니즈 충족시키는지 평가하도록 함
EU Consumer Credit Directive	· 지속가능성 검토: 판매 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인지 확인 · 끼워팔기 금지: 대출 시점에 판매 불허 , 소비자가 신용생명보험이 필요한지 여부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투명성과 비교가능성: 소비자가 비교가능하도록 보험료 총액 포함한 대출금액 알려주어야 함 · 조기상환 시 선급보험료의 미경과보험료를 환급해 주어야 함 · 판매수수료 금지



해외사례

1. 미국 1) 실적

● 미국 생보사의 신용보험(만기 10년 미만) 장기 실적은 감소 추이

- ▣ 대출기간 10년 이상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실적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 ▣ 생보험회사는 은행, 신협 등을 통해 단체신용생명보험 판매
- ▣ 신협 조합원이 대출 받을 때 신용생명보험 가입시키는 구조
- ▣ 대부분 일시납 보험료 방식으로 최초 대출금에 합산하여 부과

미국 생보사 신용보험 실적 추이(만기 10년 미만)

	계약건수 A (천건)	전체가입금액 B (백만달러)	건당 가입금액 B/A(천달러)
1975	80	112,032	1,400
1995	57	201,083	3,528
2000	50	200,770	4,015
2005	40	165,605	4,140
2010	23	111,805	4,861
2015	15	76,133	5,076
2018	14	83,534	5,967

주: 1) 미국 생명보험협회(ACU)는 종목별 가입건수 가입금액 통계 발표 시 개인보험(individual), 단체보험(group), 신용보험(credit)으로 구분함. 신용보험에는 만기(duration) 10년 미만 신용보험만 포함하며, 대출기간 10년 이상인 신용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 각각 포함시킴.

2) 2005년 이후 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ies) 실적 포함

자료: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2019), 2018 Life Insurance

1. 미국 1) 실적

● 미국 생명보험시장에서 신용보험은 틈새 역할

- 수입보험료 규모 \$1.7billion (신용생명, 신용상해·질병 비슷한 규모)
-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0.24% 수준 유지

미국 신용보험 시장 규모 추이(생명보험회사, \$million, %)

	신용보험			생명보험 전체(D)	신용보험 비중(C/D)
	생명(A)	상해·질병(B)	소계(C=A+B)		
2015	918	908	1,825	681,078	0.27
2016	829	822	1,651	683,353	0.24
2017	809	831	1,640	691,375	0.24
2018	815	853	1,667	733,198	0.23
2015-18 평균	842	853	1,696	697,251	0.24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20), Insurance Fact Book

1. 미국 2) 감독

미국 신용생명보험 감독 연혁

시기	내용
1917	Morris 신용보험 개념 착안("No man's debt should live after him")
1949	NAIC 조사 착수 통해 신용보험 문제점 파악
1951	신용보험협회(Consumer Credit Insurance Association) 설립
1959	단체계약(group policy)에 특별공제(1959 Tax Act) 부여함으로써 단체계약 위주 시장형성
1966	NAIC 1966 Proceedings 채택 신용보험 요율규제(prima facie rates): 적정 손해율 50% 수준
1968	The 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제정
1972	은행지주회사의 신용보험 자회사 설립 허용
1979	신용생명, 신용상해·질병보험의 최저 손해율 60%로 높임
1982	저축대부조합(S&L) 신용보험 판매 허용
1983	신용조합(Credit Union)이 신용보험 자회사로부터 수수료 수취 가능
1994	NAIC Credit Insurance Model Regulation에서 최저 손해율 60% 명시

자료: Fagg and Hammerly(1991), A Study Guide for Credit Life and Disability Insurance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미국 2) 감독

미국 NAIC, SOA 신용생명보험 요율 연구

보험금 지급 원가 분석	
1957 NAIC Mortality Study	1955년 평균 보험요율: \$0.271/100/year
	1956년 평균 보험요율: \$0.285/100/year
	보험료 기준 상품 구성: 단체계약 70% + 개인계약 30%
1964 NAIC Mortality Study	기준 손해율 50% 하에서 prima facie 요율이 \$0.30/100/year인 주들은 요율을 \$0.60/100/year 수준으로 인상
2018 NAIC Study	신용생명보험회사(129개), 신용상해 및 장애보험회사(116개) 대상 경험통계 분석(2013~2017, 순보험료/경과보험료/발생손해액/손해율)
1978 SOA Study	보험계리사회에서 신용보험위원회 구성, 경험데이터 Pilot 분석
SOA Study	2002 / 2009 / 2017 Credit Life Mortality Study 수행
	신용보험 관련 경험 데이터 분석
	최근 신용보험 사망률과 이전 사망률 비교 정보 제공
	계리사에게 신용보험 산업의 변화, 경험률에 대한 통찰력 제공

자료: Fagg and Hammerly(1991), NAIC(2018), SOA(2018)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미국 2) 감독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신용보험 규제

- ▣ 채무자와 일반 국민 보호를 위해 계약형태, 운영기준, 요율규제,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한도 설정
- ▣ NAIC는 신용생명, 신용상해·질병보험의 기준손해율 60% 설정
- ▣ 3년 주기로 기준손해율 발표, 실제 손해율이 기준손해율 하회 시 감독당국의 승인받아야 요율 인상 가능
- ▣ 뉴욕주는 단체신용보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비스 항목별 최대 비용 부과 한도 설정(가입금액 \$1,000 당)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가입기간 12개월 초과	
	분리형(not packaged)	일체형(packaged)	분리형(not packaged)	일체형(packaged)
채무자 등록	0.060	0.045	0.051	0.035
환불 처리	-	-	0.010	0.007
보험금 청구 처리	0.035	0.025	0.005	0.005
일반관리	0.007	0.007	0.013	0.011
보험금 지급 처리	0.035	0.025	0.005	0.005
전자기록 전송	0.010	0.010	0.010	0.010

1. 미국 3) 모기지신용보험

● 뉴욕주는 10년 이상 모기지신용보험에 대해 일반 신용보험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 ▣ 신용생명보험: 기준 손해율 72% 초과 시 요율 인상 허용
- ▣ 신용상해·질병보험: 기준 손해율 70%(단생)/75%(연생) 초과 시 요율 인상

뉴욕주 10년 이상 모기지대출 신용생명보험 요율(\$1,000 기준)

가입연령	모기지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22세	0.11	0.13	0.15	0.17	0.19	0.19
27세	0.13	0.15	0.18	0.18	0.20	0.23
32세	0.17	0.18	0.21	0.22	0.25	0.26
37세	0.22	0.25	0.27	0.30	0.35	0.39
42세	0.27	0.34	0.42	0.50	0.57	0.63
47세	0.45	0.57	0.69	0.81	0.89	0.95
52세	0.73	0.91	1.11	1.25	1.34	1.39
57세	1.15	1.47	1.71	1.84	1.91	1.96
62세	1.91	2.29	2.47	2.57	2.63	2.66

자료: 뉴욕주 보험법 185.14 Special rules for credit insurance on transactions secured by real estate mortgages.

1. 미국 4) 판매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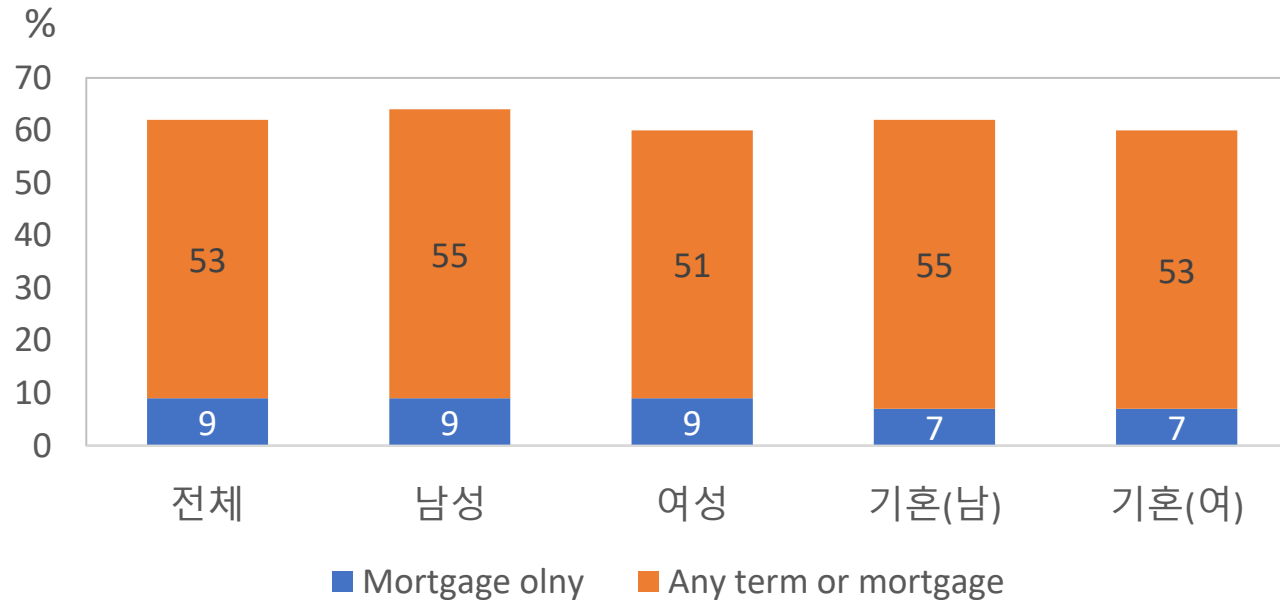
- **뉴욕주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연합회(NYBA: New York Bankers Association)는 신탁(trust)을 설립하여 단체보험 취급**
 - ▣ 협회 회원사 대출고객을 피보험자로 신용보험 제공
 - ▣ **은행의 역할은 단체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offering), 대리점 X**
 - ▣ 은행이 청약서 작성하여 NYBA Group Creditors Insurance Trust 송부
 - ▣ 수탁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service fee) 지급
 - ▣ 수수료는 은행이 제공하는 운영관리서비스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원가)을 충당하기 위한 것, 보험회사가 합리적 수준임을 입증해야
 - ▣ 수수료 지급 가능한 서비스: 보험료 계산, 보험료 수금, 증명서 발급, 보험료 환급, 보험금 지급 처리 등
- **단체신용보험에 포함되는 사항**
 - ① 수탁자의 해당 계약에 대한 책무
 - ② 채권자 유형별 보험료 부과 방법
 - ③ 최대 보험가입기간 35년

2. 캐나다 1) 가입률

● 캐나다 정기보험 가입률 53%, 모기지 생명보험만 가입한 개인 9%

- Mortgage only 비중: 2013년 17% → 2019년 9%
- Term only 비중: 2013년 48% → 2019년 47%
- Any Term or Mortgage only 비중: 2013년 61% → 2019년 53%

캐나다 모기지 신용보험 가입률(2019, %)



자료: LIMRA(2020), Canadian Life Insurance Ownership Report.

2. 캐나다 3) 모기지신용보험

● 캐나다 모기지생명보험(mortgage life insurance)은 주로 은행 통해 단체보험 방식으로 가입

- ▣ 주택구입 시 모기지대출자가 계약금 20% 이상 납부 시 가입 가능(선택 사항)
- ▣ 보험료는 대출금 상환액에 포함되어 차입자 부담
- ▣ 모기지대출한도 \$500,000, 보험가입한도 \$750,000, 가입 가능연령: 18~65세, 계약종료 연령 65~70세
- ▣ 상품형태: 신용생명+Disability(소득보상 최대 24개월, 월 \$3,000 한도)
또는 신용생명+Critical illness

● 가입자 보호조치

-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간 취소 가능, 보험료 전액 환불(미국과 영국도 30일 내 취소권 부여)
- ▣ 은행은 보험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 보험사로부터 운영관리수수료 (administration fee)만 수령
- ▣ 보험모집은 모기지 브로커(mortgage specialists) 통해 이루어지고, 이들이 보수(compensation) 수령
- ▣ 가입대상을 보험금 수령 가능한 자로 한정
 - Disability: 경제활동자(정규직, 자영업자, 계절종사자 등 주 20시간 이상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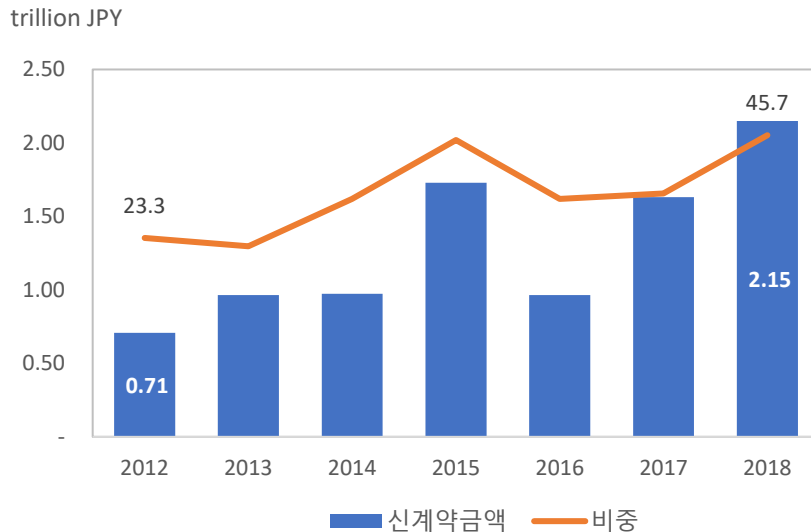
2. 캐나다 4) 판매방식

- 캐나다 신용보험 판매 은행 행동강령에 따라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문서화된 정보 제공, **담당자 지정하고 최고경영자가 이행 책임**
 - ▣ 신청 중인 상품이 보험상품이라는 사실
 - ▣ 보험 관련 주요 용어 및 정의
 - ▣ 보험상품 관련 모든 수수료·비용(fees and charges)과 부담 방법
 - ▣ 고객이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가입 가능하다는 사실
 - ▣ 보험상품을 인수하는 원수보험회사 이름
 - ▣ 보험 가입의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는 방법 및 시기
 - ▣ 보장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 ▣ 고객 취소 시 보험료 환불 기간
 - ▣ 고객의 책무와 고객이 언제든지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 보장범위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약관
 - ▣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 절차
 - ▣ 보장 범위에 대해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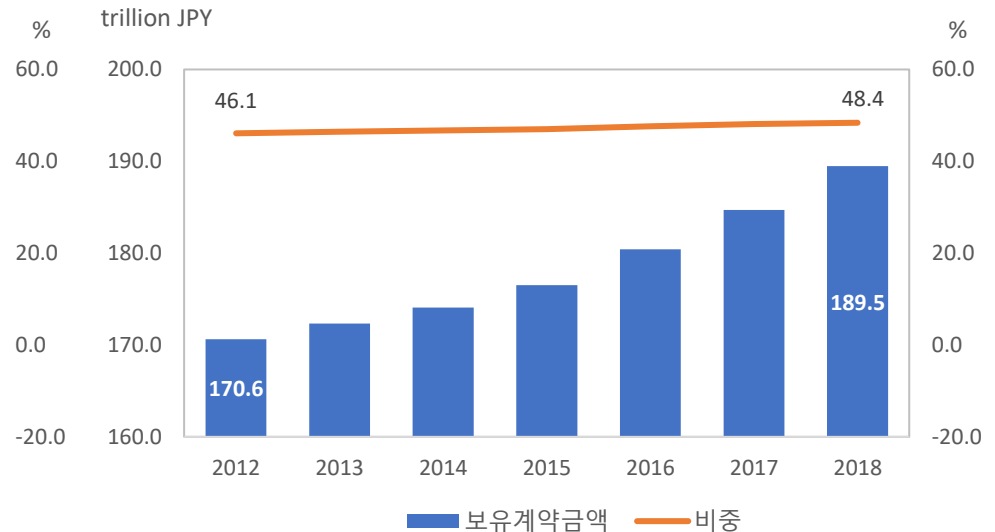
3. 일본 1) 시장규모

- **일본 신용보험은 은행, 신용보증기관이 보험계약자=수익자가 되고 채무자=피보험자인 단체계약 형태**
 - **단체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45% 초과, 보유계약금액 189조엔**

일본 단체신용보험 신계약 추이



일본 단체신용보험 보유계약 추이



주: 좌측=계약금액 규모, 우측=전체 단체계약 중 차지하는 비중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Life Insurance Fact Book, 각호

3. 일본 2) 주택담보대출 특화 신용생명보험

● 일본 생보사들은 1966년부터 단체신용보험을 독자적인 상품으로 판매,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특화한 생명보험**

■ 보험료 납부 방식 2가지

-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포함: 대출 시 보험가입 요구,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별도 보험료 구분 안됨, 질병보장 추가 시 대출금리+ α
- 임의 가입시 개인별 보험료 납부(예: 플렛 35 차입자 대상)

일본 단체신용보험 종류(일반 금융기관)

	단체신용생명보험	3대 질병보장 포함 단체신용생명보험	7대 질병보장 포함 단체신용생명보험
보험료	- 금융기관 이용 시 대출금리에 보험료 포함	주택담보대출금리+0.3% 정도	연령, 대출잔액, 대출내용에 따라 별도 보험료 부담
보장내용	사망 또는 고도장해	사망 또는 고도장해 +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또는 고도장해 +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만성신부전, 간경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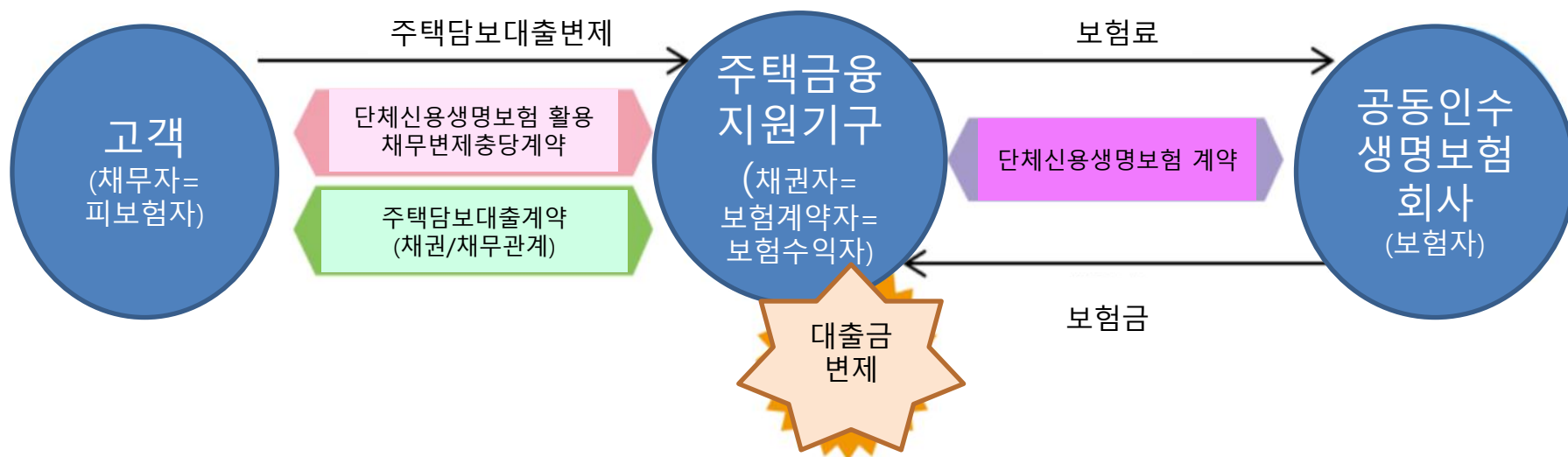
주: 이지연, 일본의 소비자대출거래와 단체신용생명보험, 월간생명보험, 2018.7

3. 일본 2) 주택담보대출 특화 신용생명보험

- 공적기구인 주택금융지원기구(Japan Housing Finance Agency, 2007년 설립)에서 전국 300개 이상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전기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flat 35) 제공하고 임의방식으로 단체신용생명보험 제공

- ▣ 차입자가 사망, 고도장애, 3대 질병 시 잔여 대출금액 변제
- ▣ 16개 생보사가 참여하며 지역별로 가입 여부와 보험금 지급 심사는 간사사 담당
- ▣ 가입거절 시 미가입 상태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 단체신용보험 구조



3. 일본 2) 주택담보대출 특화 신용생명보험

● 단체신용생명보험은 두 가지 유형

- 기본형(단생과 부부연생): 사망 및 고도장해
- 3대질병부가형: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공적장기간병보험의 개호상태

融資・金融商品のご案内

- ▶ 融資・金融商品一覧
- ▶ 金利情報
- ▶ 取扱金融機関
- ▶ 住宅の技術基準・検査
- ▶ ご返済中の方
- ▶ **団体信用生命保険**

일본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출금리
단체신용생명보험(단생)	플랫35 대출금리
단체신용생명보험(부부 연생)	플랫35 대출금리 + 0.18%
3대질병부가형 단체신용생명보험	플랫35 대출금리 + 0.24%

주: https://www.flat35.com/seminar/web_doll.html#SUB13에서 저자 작성

3. 일본 2) 주택담보대출 특화 신용생명보험

- ‘Flat 35’ 대출 시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절차 및 특징
 - 대출 신청 시 청약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 가입 신청 기한은 모기지 계약 수속 시점까지이며, 모기지 상환 도중에 가입 할 수 없음
 - 대출금액 5,000만엔 초과 차입자가 3대질병 보장부 단체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검진 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 보험가입금액 상한은 1억엔으로 제한
 - 보험료는 매월 대출 상환금에 포함하여 납부
 -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탈퇴 처리하고, 이후 재가입 불허
 - 납입한 보험료는 연말 소득공제 대상 아님



국내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 국내 현황 1) 시장규모

● 국내 신용생명보험 실적(2020.6 누적)

- 방카슈랑스 판매: 1,829건(청약 거절률 18.9%)
- GA 판매: 정기보험 특약 형태, 5,053건(청약 거절률 21.2%)
 - GA채널에서 순수 신용생명보험 판매 없음
- 방카 규정에 따라 방카 판매 신용생명보험이 더 저렴(일반채널의 70%)
 - 사업비율 13% 수준
 - 은행 모집수수료 월납보험료 680%
- 평균 가입금액 1억 3천만원, 평균 보험료 3만 4천원

1. 국내 현황 2) 감독

- **신용생명보험은 허가 종목단위에는 없고, 방카 영업규제를 위한 시행령 별표에 표시, 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에서 정의**
 - 신용생명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신용손해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신용손해보험의 정의 일반적 기준과 불일치)
- **보험상품 개발 관련 법규는 명문화**
 - 기초서류: 보험업법 및 관련 법규 규정 준수
 -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검증 및 확인서 받아 처리
 - 신고상품의 경우 금감원에 신고 및 수리
 - 방카 상품 가격 제한
 - 신계약비 일반 채널의 70% 수준

1. 국내 현황 2) 감독

● 신용생명보험을 구속성 위험이 높은 상품으로 간주하여 엄격한 규제 적용

- ① 대출과 보험가입 창구 분리(지점당 2명)
- ② 대출 관련 사이트 연계 금지(아웃바운드 영업 금지)
- ③ 불공정모집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출담당자의 대출심사업무 뿐만 아니라 "대출서류의 접수 등 대출 관련 단순업무도 포함"** → 대출담당 직원 상품 권유 위축

- ① & ②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여건 고려한 규제로서 모든 방카 상품 적용
- ③ 단체신용생명보험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 검토 필요

→ 감독당국 답변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는 대출집행결정권자가 아닌 일선 대출창구 업무종사자가 대출상품을 설명하고, 대출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 뉴욕주, 캐나다에서는 은행창구 직접 판매방식보다 신탁 활용(수탁자 역할), 모기지 브로커 활용 추정
- 반면, 일본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를 위해 신용생명보험에 대해 적극 안내 및 가입 권유【フラット35】の団体信用生命保険, 【団信の種類とデュエットとは?】
(https://www.flat35.com/seminar/web_doll.html)

2. 가계 부채위험관리 필요성

-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절대 규모 빠른 증가세

가계신용 잔액(조원, %)

	규모			비중		
	가계신용 A+B	가계대출 A	판매신용 B	가계신용 A+B	가계대출 A	판매신용 B
2017	1,451	1,370	81	100.0	94.4	5.6
2018	1,537	1,447	90	100.0	94.1	5.9
2019	1,600	1,505	96	100.0	94.0	6.0
2020.3Q	1,682	1,586	97	100.0	94.3	5.7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 2020.11.24

2. 가계 부채위험관리 필요성

- 2020년 3분기 주택담보대출 규모 890조원
 - 은행 567조원, 비은행 95조원, 기타 금융기관 229조원
 - 약정만기기간 10년 이상 65%, 30년 이상 44% → 채무자의 사망, 질병, 상해, 실업 등 인적위험 노출

주택담보대출 잔액(조원, %)

	계 A+B	예금기관 A	은행	비은행	기타기관 B	계 A+B	예금기관 A	은행	비은행	기타기관 B
2017	770	578	464	114	192	100.0	75.1	60.3	14.8	24.9
2018	808	604	494	110	203	100.0	74.8	61.2	13.6	25.2
2019	843	634	534	100	209	100.0	75.2	63.4	11.8	24.8
2020.3Q	890	661	567	95	229	100.0	74.3	63.6	10.7	25.7

주: 1) 예금기관: 예금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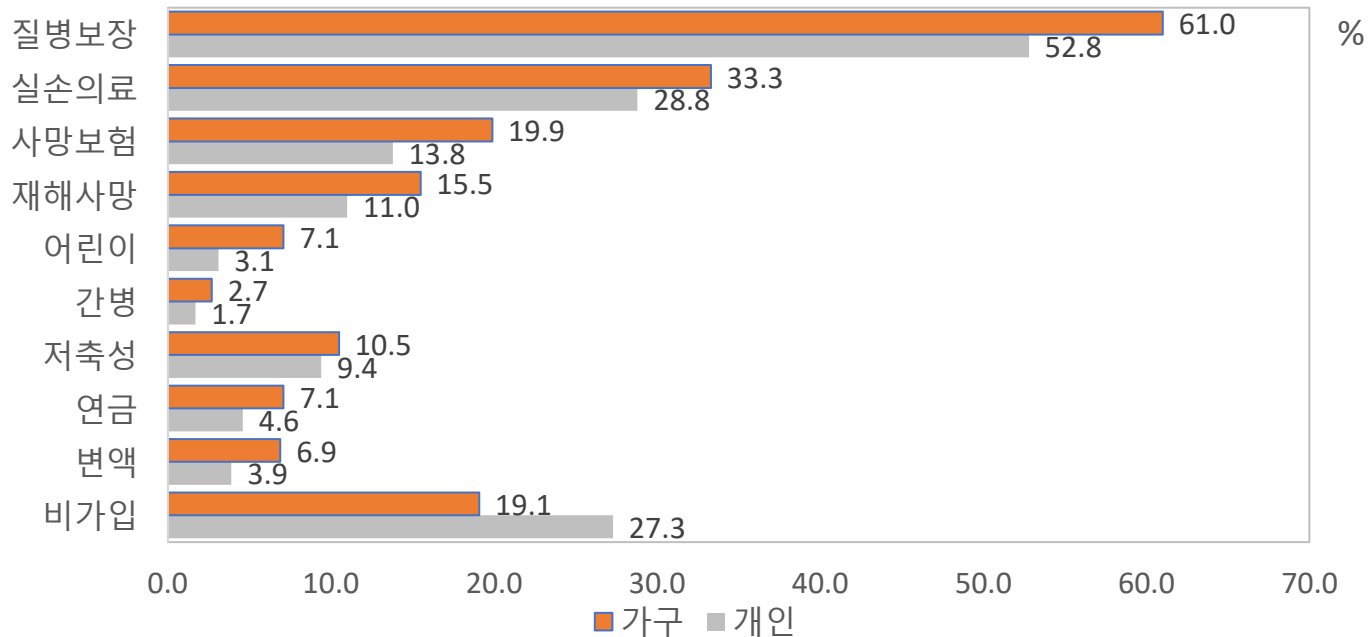
2) 기타기관: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회사,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한국장학재단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 2020.11.24

3. 보장보험 가입

- 2019년 우리나라 가구의 사망보험 가입률 19.9%
 - 재해사망보험 가입률 15.5%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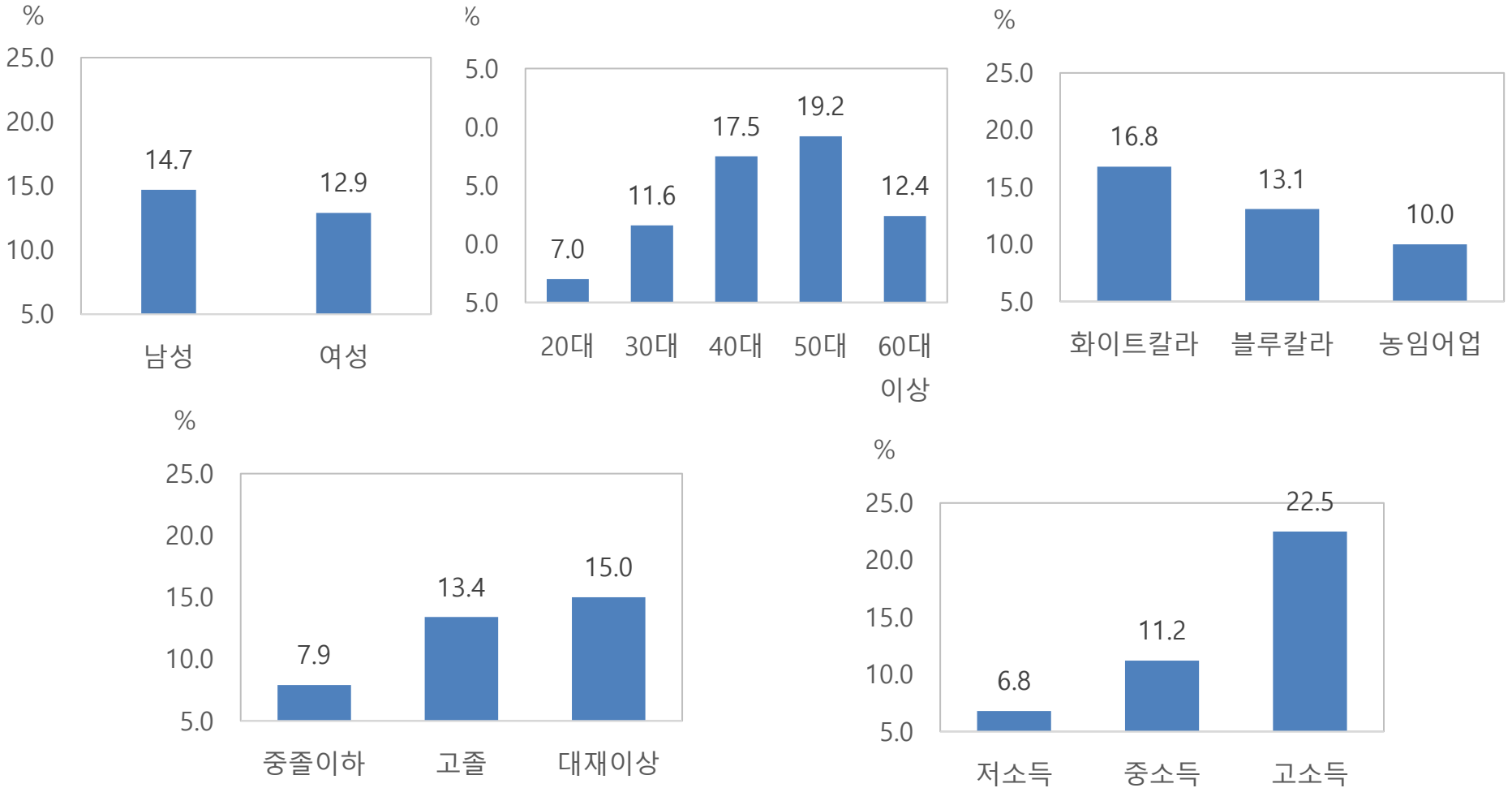
보험 종목별 가입률(2019)



출처: 보험연구원,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9.10.

3. 보장보험 가입

개인별 사망보험 가입률(2019)



출처: 보험연구원,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9.10.

3. 보장보험 가입

주택담보대출규모별 차입자의 보장보험가입(만원, 명, %)

총부채 잔액	가구원수	질병/상해/사망보험		월평균 가구소득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가입률	보험료				
5천만원이하	2.3 (3,774)	71.4% (3,774)	467 (2,702)	331 (3,767)	26,573 (3,682)	2,495 (827)	25,271 (3,774)
1억원이하	3.1 (382)	93.8% (382)	645 (362)	511 (382)	48,614 (380)	8,168 (382)	40,244 (382)
2억원이하	3.2 (336)	93.6% (336)	810 (315)	592 (336)	58,426 (336)	15,701 (336)	42,726 (336)
3억원이하	3.1 (112)	94.0% (112)	685 (106)	623 (112)	88,081 (112)	25,329 (112)	62,753 (112)
3억원초과	3.2 (166)	89.1% (166)	839 (150)	757 (166)	157,316 (166)	57,142 (166)	100,174 (166)
전체	2.5 (4,770)	75.6% (4,770)	530 (3,635)	380 (4,763)	35,370 (4,676)	11,222 (1,823)	30,382 (4,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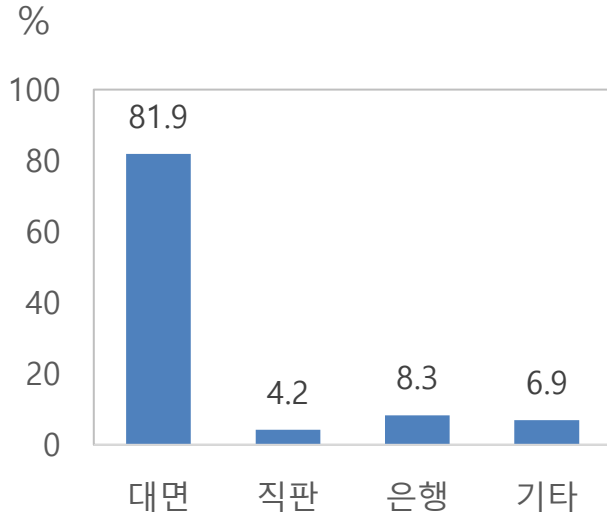
주: 1) 재정패널 조사대상연도 2017, 2019년

2) 괄호안은 0값을 제외한 유효 값이 존재하는 표본가구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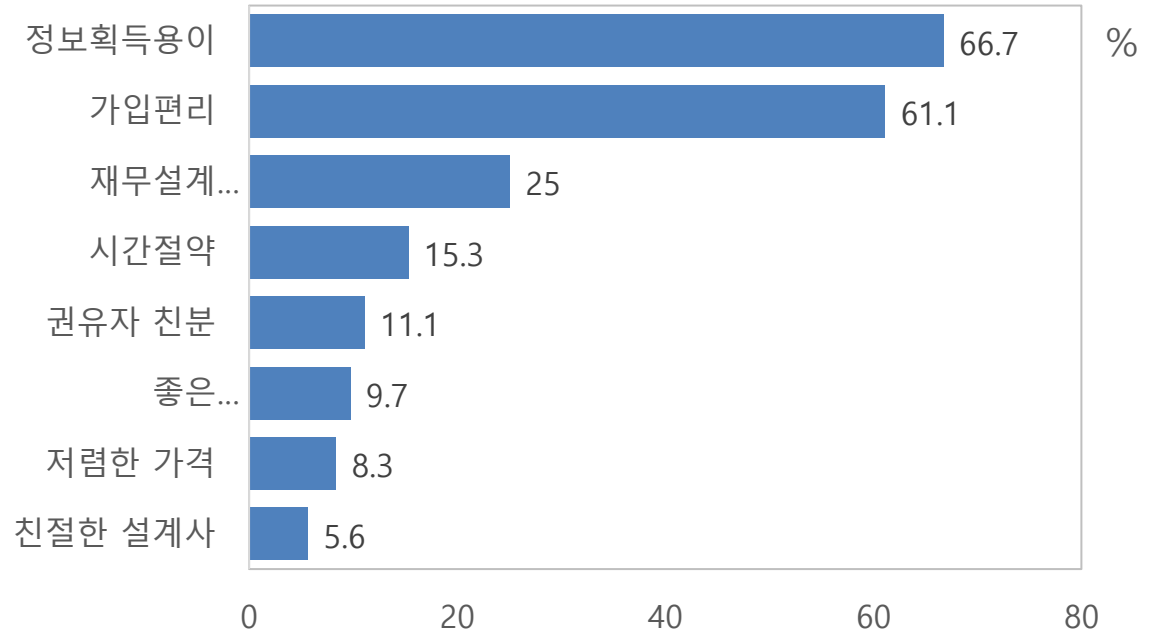
출처: 강성호(2020) 미발표자료.

3. 보장보험 가입

사망보험 채널별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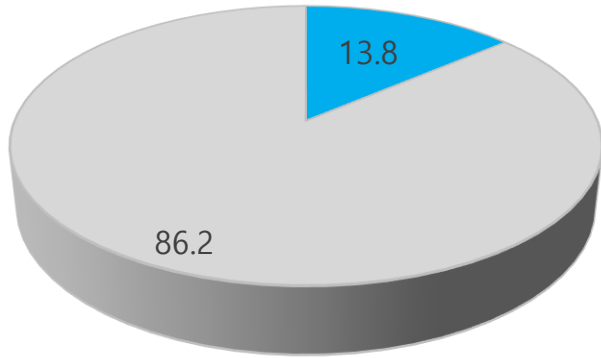
사망보험 가입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출처: 보험연구원,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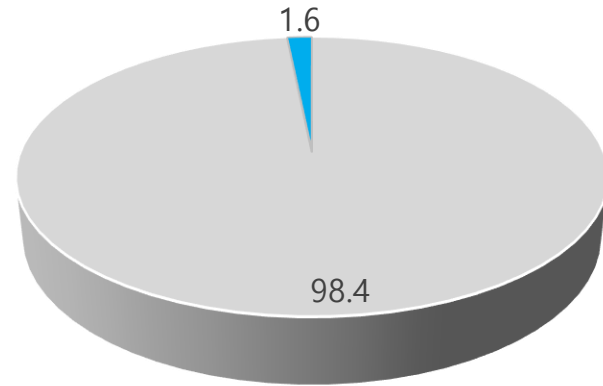
3. 보장보험 가입

사망보험 현 가입 상태



■ 가입 ■ 미가입

사망보험 1년내 가입 의향



■ 가입의향 없음 ■ 가입의향 있음

출처: 보험연구원,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9.10.

4. 단체신용생명보험 활용 필요

금융당국,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추진 2020.12.9 보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시장 도입을 추진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3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주재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범공급하는 등 초장기 주담대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

현재 주담대 상품의 상환기간은 최대 30~35년 수준이다. 이보다 만기가 더 긴 상품을 도입하면 차주의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4. 단체신용생명보험 활용 필요

- 주택은 대부분 가계에서 가장 큰 자산, 신용생명보험은 가장 중요한 자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상품
 - '신용'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지만, 순수생명보험으로 차입자의 인적위험 관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상환해야 하는 채무금액이 존재할 때만 보장하는 비용 효과적인 수단
 - 주택담보대출 기간 30년 이상 장기, 정부는 40년 대출상품 검토 중 → 차입자 사망/상해/질병/실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제공되어야
- 단체신용생명보험 활용 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 일본, 캐나다, 미국 등과 같이 1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특화 한 생명보험상품으로서 단체신용생명보험 활성화 필요
 - 동 상품의 효용성에 대한 정부 및 가계 인식 제고 필요
 - 국내 금융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및 감독 방안에 대한 공감대 필요
 - 단체계약 방식으로 대출금리에 보험료를 포함시키되 명확하게 항목 분리(원금상환액+대출이자+보험료)
 - 은행창구 직접 판매 외 다른 방식 강구 필요(모기지 브로커 역할하는 존재 필요)
 - 일본과 같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신용생명보험 순차 가입 → 30일 내 취소권 부여
 - 일본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 및 감독 방안 조사 필요